

제400회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11월21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9)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1)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1)
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2)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26)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83)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9)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4)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8)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9)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1)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3)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5)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0)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2)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2)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0)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4)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4)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8)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1)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4)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1)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6)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1)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2)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3)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9)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5)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6)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89)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8)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5)
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7)
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89)
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6)
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3)
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5)
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7)
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5)
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4)
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3)
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0)
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6)
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6)
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9)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0)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3)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5)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2)
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8)
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4)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7)
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17)
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9)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5)
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6)
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2)
6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2)
6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2)
6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5)
6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2)
6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9)
6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6)
7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8)
7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1)
7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8)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9)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9)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3)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9)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6)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4)
7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0)
8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6)
8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7)
8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3)
8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7)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70)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1)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0)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9)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36)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34)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5)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7)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9)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4)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4)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5)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3)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9)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1)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4)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0)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1)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5)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7)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4)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6)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9)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7)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2)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0)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3)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0)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4)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1)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7)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2)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4)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2)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6)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3)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1)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4)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62)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9)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7)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1)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9)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1)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1)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9)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6)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7)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9)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2)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3)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3)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6)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0)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6)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5)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4)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7)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8)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1)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9)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4)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2)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8)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7)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3)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2)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2)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9)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4)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1)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5)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1)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3)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5)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2)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8)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3)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1)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2)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1)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1)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3)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5)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3)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3)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5)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8)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6)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3)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2)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6)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8)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6)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4)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1)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8)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4)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6)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8)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0)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4)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1)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8)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9)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0)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2)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1)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4)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9)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7)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8)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6)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5)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8)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4)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0)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1)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7)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2)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9)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2)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3)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0)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6)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6)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5)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9)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6)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7)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4)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8)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2)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7)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4)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20)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2)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1)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4)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7)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7)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7)
 2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3)
 2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7)
 25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9)

상정된 안건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9)	8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1)	8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1)	8
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2)	27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	30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30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9)	30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30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30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4)	31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31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8)	31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9)	31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1)	31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3)	31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5)	31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0)	31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2)	31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2)	31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0)	31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4)	31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4)	31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8)	31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1)	31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4)	31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1)	31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6)	31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1)	31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2)	31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3)	31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9)	31

(14시08분 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기간 최대한 조세 분야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상정되어서 논의할 안건만 하더라도 200건이 훨씬 넘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앞으로 여섯 차례 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전체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상호 간 이해와 협

력이 아주 긴밀하게 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 측에서도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배석자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소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근 간사님 먼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신동근 위원입니다.

조세소위가 구성된 만큼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 소위 활동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머리를 짜서 서로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홍영표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소위 구성은 제일 늦었지만 가장 내실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야당 위원

님들과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조해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할 양은 많고 시간은 촉박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담도 큰데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장혜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정의당 장혜영 위원입니다.

희망하는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보편적인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및 이와 병합심사가 필요한 법률안과 두 번째는 일몰 연장 등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한 후에, 그 외에 간사 간 합의 법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건제상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659)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671)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1)

(14시12분)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나서 위원

님들께서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중에 합의된 사항은 잠정 결론 또는 잠정 합의를 하도록 하고 쟁점이 있거나 정리가 필요한 안건은 뒤로 미루어서 추가 논의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정리되는 안건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호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1권 1페이지의 국세기본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한의 특례 규정에 대체공휴일과 일요일을 명확화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세의 신고·납부 기간이 공휴일이 해당될 때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법률적 근거가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21년 7월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고 또한 일요일도 명확히 기한의 특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조항들이 국세징수법과 관세법에 동일하게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방기선 제1차관과 고광효 세제실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도 드렸고 또 정부 측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의견 없으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2번 전자송달 신청의 자동철회 간주 규정을 상향입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자가 2회 연속해서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있던 것을 기본법에 상향입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방법 중 전자송달은 신청한 경우에만 한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송달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납부고지서라든지 신고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거나 아니면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해서 열람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시행령에서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해서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2회 연속해서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납부고지서 1건당 1000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는 경우로 하고 있지만 현재 시행령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 현재 시행령에서는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고지서에 대한 세액을 납부기한 전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 철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명확하게 하는 취지로 8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는 현재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금년 초에 저희가 세법 시행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법제처에서 전자송달 신청의 자동철회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그에 따라 법률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수정의견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수정의견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수정의견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신동근 위원 저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의견으로 잠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호영 위원께서 방금 도착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다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주호영 위원 의회가 생긴 역사를 보면 왕의 과세권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가 동의하는 그런 데서 시작된 걸로 보아 기재위 조세소위야말로 의회 중의 의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법에도 좀 관심이 있고 이래서 열심히 해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소위에 미리 배정이 되고 난 뒤에 보니까 사정이 바빠서, 제가 출석에 자신이 없어서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마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출석을 담보 못 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산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국민들에게도 가장 도움이 되고 또 나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3번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

설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재산의 실질귀속자 확인에 대해서 특례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는 5년이고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7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통상의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그 이후에 실질귀속자가 확인된 경우 현재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내국인 거주자에 대해서도 실질귀속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두 번째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거짓, 부정행위로 신고한 경우에 15년이 되겠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특례로서는 부정행위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부정행위를 통한, 그러니까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한 경우에 대해서도 상속이나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것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외국법인을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한 2차 납세의무 보완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국세 납부할 돈이 없다고 하면 그 법인에 대해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주주가 갖고 있는 법인주식의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주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외국법인의 주식이 매각이나 양도가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는 사실 과거에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이 안 돼서 조세포탈이 이루어진 측면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전문위원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결론을 미리 내 가지고 그냥 딱 답만 내고 끝내 버리면 안 돼요. 소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쟁점사항을 명확하게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관련되는 핵심사항을 설명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위원장님, 이미 조금 지났지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지만 이 부분이 지금 부정이나 미신고, 거짓 신고에 대해서 15년까지 부과체척기간을 연장했잖아요. 원래 상속이 옛날 법에는 다 10년이었던데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10년이었지요.

○유동수 위원 그런데 15년으로 한 이유는…… 이렇게 부정하거나 미신고, 거짓신고에 15년을 뒀고요. 민법상이나 여러 법에서 볼 때 체척기간을 뒀다는 건, 체척기간을 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 15년간 납세의무자가 심적으로 저야 할 고통을 인정한 것 때문에 다 체척기간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부과체척기간을 무력화시키는, 근본적으로 체척기간을 둔 법 취지에 위반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문위원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법안 토의를 하지, 결론만 내 가지고 바로바로 해 버리면 안 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전문위원님, 설명하실 때에 관련되는 사항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이번에 그 미비점을 반영하는 그런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다섯 번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경정청구제도는 이미 신고·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될 세액보다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해서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경정청구제도가 되었고,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당초의 과세표준, 세액의 신고·결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기존 결정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소송에 대한 판결로 과세표준, 세액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준하는 심사청구라든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정·경정으로 연동된 다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세액이 과다 신고된 경우도 경정청구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후에 있을 수 있는 권리구제를, 불복신청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문언에 따르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은 기존의 결정·경정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부분은 현행법에 따라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그리고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이게 개정안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과 관련된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그 부가세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21년도, 다른 과세기간의 부가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해서 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게 현행 규정이고 22년의 부가세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22년도의 소득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소득세도 많이 냈으니까 고쳐달라, 그게 개정안의 취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면 22년에 부가세를 많이 냈는데 21년도에 부가세를 많이 냈고, 그러면 21년의 소득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이게 조세심판이라든가 국세심사결정에 따른 것들도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다른 세목에 관해서…… 지금 마지막에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국세청 실무나 예규를 통해서 확대해서 적용되지 않도록 성실히 운영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 전문위원 취지하고 차관님 취지하고 같은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같은 겁니다.

○고용진 위원 다른 과세기간, 다른 세목 관해서 어떻게 경정청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대 해석되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그 부분은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고용진 위원 전문위원 생각도 마찬가지로입니까?

○유동수 위원 아니, 국민의 권리가 보호된다면 확대 해석하는 게 맞지 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지금 납세자 권익보호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확대 해석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취지는 본 법 개정안 취지하고 좀 다른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세제실장님,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전문위원 지적은 다른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적용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세법개정안 가져온 것은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만 추가하는 것이지 다른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문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전문위원실에 드리고요.

후발적 경정청구라는 것은 매우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어야지, 이미 과세가 다 끝난 건데 아주 나중에 어떤 심판이나 심사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걸 다시 경정을 하게 되면 과세관계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하기 위해서 세법개정안을 갖고 왔는데 다른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까지 하기에는 지나치게 넓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유동수 위원** 아니, 걷어 갈 때는 마음대로 다 걷어 가고 심사·심판에서 결정돼 가지고 새롭게 해석이 나왔는데 그걸 과다하게 납부한 것까지 소급해서 안 해 주겠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과세에 맞게 모든 세목에 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세제실장님, 지금 조문이 안 나와 있고 19쪽에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조문을 준비해서 다음에 가져오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현재 쟁점은 그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은 당연히 이번에 포함이 되는데 다른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 관련되는 게 어떻게 될 건가가 쟁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조문 자체를 명확히 해서 다음 논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에 맞게…… 물론 우리 과세당국은 일이 복잡해지지요, 다른 과세종목에 과세기간까지 하려면. 그런데 이것 자체의 취지에 맞춰 보면 유동수 위원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검토를 잘 하셔서 조문 정리를 한번 다시 해 주세요.

○**소위원장 류성걸**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명확히 하라는 취지는 어쨌든 어떤 정해진 의도가 아니라 방금 얘기한 취지에 부합하게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전문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김경호**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부가세까지 경정을 해 준다고 하면 연동된 소득세가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납세자의 권리구제 차원에서는 그 부분까지, 다른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도 경정청구를 허용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또한 국세의 부과제척기준에서 보면 거기서도 국가가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사실 이거랑 같이 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가 부과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똑같이 다른 세목과 다른 기간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납세자가 불리해지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님 말씀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부과제척기간이 다 경과했어. 그런데도 경정청구 사유 때문에 소급해서 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된 걸 다시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끝난 거고……

○**전문위원 김경호** 부과제척의 특례를 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다만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납세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다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어느 부문까지 할 것인지를…… 당초에 정부에서 이 안을 낼 때 동일 세목의 다른 기간, 그런데 이것하고 연계된 다른 세목의 다른 기간까지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해서, 지금 논의를 계속해도 똑같은 이야기니까 정리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덧붙여서 전문위원도 이런 의견을 내셨으면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할 수는 없어요? 왜 안 해 났어요, 이것만 해 놓고?

○**전문위원 김경호** 경정청구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안 취지대로 한다고 하면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2번까지만 했을 때, 현재는 ‘다른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명확하게 다른 세액의 다른 과세기간은 빠지는 걸로 했을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다른 과세기간의 다른 세액까지 포함한다고 했을 때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당초에 정부가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왔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다른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까지 할 것으로 생각하고 왔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하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6번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가 원칙이고 신고납부방식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부과받은 종부세를 그대로 납부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가 가능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납세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온 다음에 고지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고서에 고지분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해서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과·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에게도 경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권리구제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의 경우에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경정청구 신청한 건수가 약 1500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용된 것도 약 720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한 납세자하고 부과·징수한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조세체계는 기본적으로 신고·납부이고 종부세나 상속세의 경우는 부과·징수 이렇게 돼 있지요, 최종적으로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세목에서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다른 세목에는 부과·징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신고·납부 케이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속·증여세하고 종부세만 해당이 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도 그런 규정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도가 완비가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돼 있습니까, 거기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잠깐만요.

여기 마지막에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정당함에도 경정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고서에 고지분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고지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신고하면 경정청구권을 확보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거는 이미 있던 제도이고요. 그러니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됐는데 가만히 있어 가지고 그냥 납세자한테 얼마를 내십시오라고 과세권자가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냈는데 보니까 세금이 잘못 됐다고 했을 때는 다시 고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넓혀 주는 겁니다.

○홍영표 위원 부과받은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정당함에도 일부러 이렇게 신고를 똑같은 액수로 해서 경정청구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있다면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면, 정당할지 안 할지는 자기가 부과받았을 때는 알 수 없고 일단은 혹시 나중에 내가 경정청구할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신고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한 5년 동안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계산을 해 봐 가지고 세금이 덜 나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고지만 받으면 나중에는 경정청구권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고지서 받은 것을 혹시나 모르니까 세금을 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렇게 하면 개선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7번 상증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대상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 세목의 경우에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시점에 소송으로 인해 재산분할이 미확정됐는지 아니면 재산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다든지 등에 대해서 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개정안은 부정행위로 인해서 시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국세기본법 개정 시에 법인세 부과 결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조항과의 법체계성도 맞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평가방법 차이가 아니라 이중계약이라든가 다운계약과 같은 부정행위 사항일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라는 취지에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 지금까지 일선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일률적으로 다 적용했나요? 어떻게 해 왔나요? 평가방법의 차이가 고의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나는 보충적 방법으로 신고를 했는데 최근에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증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한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할 때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가산세를 과세를 했나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이걸 집행하다 보니 부정행위가 있는데 아마 10% 가

산세를 부과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40%짜리인데 10%로 가산세를 부과하니 이거를 빼자, 그러니까 부정행위인 것은 40%짜리로 바꾸자라고 해서 아마 과세관청이 저희한테 세법개정 건의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니까 이게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일선에서 판단이 불분명하다 그거지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예, 이게 이중계약이라든지 다운계약서 이런 겁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중계약이든 다운계약이든 고의성이 있어서 상속세를 면탈하려고, 아니면 과소납부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으나 본인의 경우에 매매사례가액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자기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방법을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는데 최근에 옆 동의 아파트가 비싸게 팔렸는지 그렇게 되면 산정가격이 달라지잖아요, 평가금액이. 그러한 경우에 일선에서 이것을 부정적 방법으로 해석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래서 이걸 그냥 아예 명문화하겠다, 객관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평가방법에 의한 차이의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겠나?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동수 위원 예.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는 당연히 부정행위가 아니고 일반적인 가산세 면제대상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부정행위가 없었던 경우건 아니면 진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건 가산세를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정행위가 없으면 계속해서 면제고요. 다만 다운계약이나 이중계약 이런 게 확인이 되면 그런 경우까지 못 물리는 경우는 방지해야 되겠다……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다운계약이나 의도적으로 고의성이 있어서 한 경우는 부정으로 보고, 그렇지요? 자기가 고의성이 없이 자기 방법에 의한 거는 빠지는 거 아니냐고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예, 지금도 빠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뺄 겁니다.

○**유동수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선에서 지금 어떻게 부과하고 있느냐고 여쭙본 게……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예, 맞습니다. 지금 가산세 부과 안 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가산세 부과 안 하고 있다는 거 잰가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예.

○**유동수 위원** 그러면 고의성이 있어서 방법에…… 일부러 과소납부하기 위한 것들을 규정하기 위한 거네요, 이거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예, 맞습니다.

○**유동수 위원** 알았습니다.

○**조해진 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가산세 부과대상에 넣고 안 넣고가 이걸로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부과대상인데 부과세율이 달라지는 건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거는 넣고 안 넣고인데, 부정행위는 넣었는데 40%짜리입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8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외입니다.

○**유동수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의사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세법을 놓은 지가 조금 됐지만 그래도 회계사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일선에서 이걸 다 다뤄 본 세무사 경력도 오래된 사람인데 지금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법률을……

지금 법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 결정되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소위원들이 판단하기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데……

좀 자세히 하고, 현황은 어떻고 개정의 사유는 뭐고 정부안은 뭐고 우리는 검토의견이 어떻다, 이렇게 자세히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단계에서 의결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나오는 것은 본래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아닌데, 다만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까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다운계약이라든지 또는 평가를 다르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가산세 제외에서 제외를 하는, 그러니까 가산세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정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은 세제실장님, 이거는 나중에 통칭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관련되는 게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부정행위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이 없고, 이것은 규정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정행위라 함은’ 뭐 해 가지고 아마 통칭이나 이렇게 죽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조세법 처벌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제실장님께서 실무적으로 관련되는 사항 또 정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당연히 실무를 근거로 하고 다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여기는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예를 들어 부정행위가, 아까 다운계약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곁들여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번 항목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조금 감 다운 하셔서 설명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8번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의 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인지세 대상 중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금액의 30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부 의견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인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하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한 적이 전혀 없어서 현재 이 조항이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가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시기는 해당 문서를 작성한 때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동산 등기 신청할 때 등기관이 수입인지 첨부을 확인하는 것과 인지세의 법정납부기한 내 납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지세 납부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양도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세율라든지, 법인에 대해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미등기 자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인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폐지한다고 하면 추후에 양도소득세라든지 법인세 납부 과정에서, 아니면 세무조사나 조세징수를 통해서 인지세 미납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도 내용에 관련되는 사항은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정부 의견 답변을 하실 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표현은 무슨 말이나 하면 이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말씀을 들어 보면 개정할 필요가 없는데 개정한단 이런 취지거든요.

설명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를 계약하든지 부동산을 계약할 때, 계약서를 할 때 수입인지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입인지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경과가 시작돼서 사실상 시점은 계약을 맺을 때가 시점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는 데까지 길게는 6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한 3개월 지나면 사실 이때부터는 가산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확인되는 게 관례상 어떻게 되냐 하면 보통 등기를 할 때 인지를 붙이고 등기소에 갔다 내면 확인을 해서 ‘인지세를 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당한 절차를 다 거쳤구나’ 하고 등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납부 시기가 문서 작성 시기로 돼 있는 겁니다. 사실 현재의 실질적인 관행하고는 좀 차이가 많은 거지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부동산 수입인지 첨부을 확인하는 거하고 인지세의 법정납부기한 내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을 개정해서 등기를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지세에 대한 가산세를 안 내도 된다고 첫 번째 이걸로 해결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의 토지가 다 등기가 돼 있지 미등기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산세 부과할 필요성이 좀 낮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세기본법을 2020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인지세의 납부기한을…… 가산세 붙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너무 세니 이것 좀 낮추자고 적정 수준으로 한번 고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감안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지 거래, 부동산 거래의 관행을 살펴본다면 등기를 할 때 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는 가산세를 낼 필요는

없겠다, 부과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세제실장님, 지금 차관님 설명을 들어 보면 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골치 아프고 복잡하니까 덮어 버리자 이렇게 들리거든요.

실무자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관행이 납세자들한테 너무 깊이 박혀 있으니까 법을 차라리 개정하자, 법을……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지금 그런 행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골치 아프니까 덮어 버리자, 그래서 법을 개정하자, 이런 취지로 들리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에 있는 제도가 너무 집행하기 어려우니……

왜냐하면 문서 작성일에 전자수입인지를 붙여야 되는데 구매 가능한 시간이 오후 4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구매 못 하면 결국은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법원에 가면 부동산 소유권 등기할 때 등기 시점에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것을 차라리 법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어쨌든 간에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자라는 것과 또 법이라는 게 현실이나 관행을 반영하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위한 거라면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저는 전문위원님의 세 가지의 의견…… 세 번째 것은 아직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30페이지에 보면 납부지연가산세를 기간별로 세분화한 법이 최근에 개정됐다, 이게 지금 적정화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설명을 안 하셨어요.

○전문위원 김경호 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이

됐지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저는 이게 애초의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등기·미등기의 상황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가산세를 정하기 어렵다,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것의 제도적 취지는 분명히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유만으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없애는 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좀 심한 표현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이런 것 법으로 해서 문제없도록 해 버리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아까 차관님 말씀은 미등기가 없다고 하지만 찾아내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찾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미등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거래를 했다, 그렇게 찾아냈는데도 이것을 개정해 버리면 법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를 못 부과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위원장님, 그것은……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위원장님, 대안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한’ 이런 말을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증서에 관한 인지세’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전이 완료된 것은 제외를 해 준다, 이런 뜻으로 참고해서 한번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좀 전에 유동수 위원님 안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법을 정비할 수 있을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이게 도입됐을 경우에 악용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를 들면 악용된다는 게 미등기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제가 그것은 설명을 빼고 안 드렸는데 사실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서 미등기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에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다른 규정은 다른 규정이고, 가산세 관련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다음에 문구하고 같이 가져오시고.

이것은 보류하고 9항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9번 금융투자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에 맞춰서 약 2년간 원천징수를 납부 지연한다 할지라도 그때 가산세를 50%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것은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초기에 경미한 과오나 착오로 인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을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금투세가 내년 1월 1일로 하면 25년 1월 1일하고 26년 1월 1일이 아니고 당겨지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23년·24년 1월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이게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금투세 시행시기를 2년을 유예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유예된다고 한다면 찬성할 수 없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투세의 시기에 관계없이 금투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여기 2025년이라는 게 2023년이 되고 2026년이라는 게 2024년이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참석하셨는데 인사말씀해 주시

지요. 다른 위원님들 인사 다 했습니다.

○**한병도 위원**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장님 또 김상훈 간사님, 신동근 간사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9항 관련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병도 위원** 저는 아까 장혜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곧 금투세 유예 관련 논의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논의를 해야 될 법안이니까 보류했다가 이것과 함께 논의를 하는 게 훨씬 현명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좋은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투세 논의할 때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존경하는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소위 회의실에서 하지 않고 대회의실에서 합시다마는, 저도 전에 문체위 간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통상 소위는 보통 비공개로 하는데 오늘 카메라가 켜를 따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 찍고 있어서 이걸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공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간사 간의 합의도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요.

○**소위원장 류성걸**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합의해서 비공개로 의결을 하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만 그 관련되는 사항을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관례대로 외부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신동근 위원** 관계가 아닌데?

○**고용진 위원** 법에는 공개로 돼 있어요.

○**소위원장 류성걸** 법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회법 제57조 소위원회 관련된 규정 제5항에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신동근 간사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처분결과의 미통지 시 심판청구기간 규정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나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이 지나면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결정기간 3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 결정·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에 처분청은 60일 이내에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결과 통지를 받으면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분 통지를 못 받은 경우에는 아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재조사 결과 미통지일지라도 재조사기간 60일이 지나면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에 관련된 사항인데 미비한 것을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미비한 점을 보완한 건데요.

보통 이의신청이 되면 이의신청이 결정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 보라는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의신청을 결정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30일 내에 결정을 못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한 지 30일이 지나면 심사·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그게 법에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조사에 관해서는 재조사 결정을 하게 돼 있고 그 이후에 결정이 되면 60일 이내에 후속처분을 하게 돼 있는데 재조사 결정이 되고 60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후속처분이 안 이뤄진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대로 60일이 지나게 되면 이것은 납세자가 다시 한번 심사나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미통지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보호 조치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자료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요청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통지 이후에도 지연이 되는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수치로 알고 싶은데, 최근 한 3년 정도 수치를 받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 관련되는 자료는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이 관련해서는 차관님도 그렇고 또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1항 재조사 결정 시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8쪽입니다.

현재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 결정을 각하, 기각, 인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청구를 인용할 때는 취소·경정,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조사 결정을 한 이후에 재조사 결정에서 취소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지만 재조사 결과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세 불복 결정 중에 재조사 결정의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는 과세관청에서 재조사라는 것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납세자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고 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법률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사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됐을 정도의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12항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조세심판관의 제척·회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동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회의를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에 대해 정회를 하셔서 그 부분을 논의한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류성걸** 국세기본법은 항이 몇 개 정도 남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4개 남았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국세기본법 관련까지는 다 하고 합시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다 행정적인 처리사항이에요.

말씀하시지요.

○**신동근 위원** 그런데 절차와 관련해서 위원들의 이의 제기가 있고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요? 몇 개 안 남고 이게 전부 다……

○**유동수 위원** 금방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간사 간 협의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회의가 공개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간사 간 협의하실 때 이 부분 감안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국세기본법 관련되는 사항이

몇 개 안 남았는데……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3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할 때 비공개로의 전환 관련되어서 간사 간 협의를 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의결을 하면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관례상 언론 취재…… 완전하게 모든 언론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회의를 이 형태로 진행을 하고 다음번 회의부터는 관례상 언론 취재에 대해서 언론인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항입니까?

○**전문위원 김경호** 예.

○**소위원장 류성걸** 12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39페이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세심판관의 제척기준 중에서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에서 ‘사용인이었던 경우’ 부분을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해서 조세심판관 제척·회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두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임조세심판관 8명으로 구성되고 심판관회의는 상임조세심판관 2인 그다음에 비상임조세심판관 2인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조세심판관 4인씩 배치된 총 9개의 심판관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총 36인이 되겠습니다.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해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해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세심판관의 제척제도는 조세심판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심판관 지정단계에서 그 심판관을 지정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심판청구사건에 관해서는 심판조사관도 이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척기준 중 하나인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 또는 사용인이었던 사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심판관을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위촉함으로써 위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세심판관과 유사한 성격의 특허심판원의 경우에는 특허심판관 제척기준에서 대리인의 사용인 관련 규정이 없고 관련된 기간제한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게 조세심판관의 위촉을 원활히 해서 조세심판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지금 얘기한 특허법 관련은, 현재 저희가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심판청구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사용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특허법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에 대해서만 규정하면서 제한 없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인에 대한 규정을 한 이번 국세기본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이걸 5년으로 완화해 주지 않으면 심판관을 임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 풀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유가 뭐니까?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심판관이 사실은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 요건들에 해당하는 사람의 풀이 적은데,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연임하는 데 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사용인, 과거에 사용인이었던 사람들까지 하게 되면 그 풀이 더 줄어들어 가지고 실력 있고 공정한 분들을 제척 때문에, 특히 비상임심판관들을 채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공정성을 기

하기 위해서는 제척돼야 맞으나 현실에 적용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개정을 원한다, 이런 애기인가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예.

○신동근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은 이런 부분이 있다, 참고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참고하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경호 그러니까 특허심판원에 대해서는 아까 차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사용인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제한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그리고 잠깐만 제가 더 덧붙이면 전문위원께서 지금 제척기간만 말씀하셨는데 이 조문에는 회피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회피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배준영 위원 41페이지 보니까 조세심판관 제척제도를 규정했는데요, 심판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심판관 지정단계에서 그 심판관을 지정하지 않는 제도라고 그랬거든요.

현행 제척기준 1항을 보면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그랬고 그런데 사건을 맡긴 당사자들인데 불과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다시 이런 것을 맡았을 때 과연 공정성이 담보되겠는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특허심판관도 물론 종류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그 사건의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5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인에 대해서는 5년 제한 규정을 두자라는 겁니다. 특허법에는 사용인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인은 어떤 사용인이든지 특허법에서는 그게 제척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조세심판관만 이런 규정이 있어서, 더 공정성을 위해서 사용인까지도 제척기준에 포함이 되는데 그 사용인의 기준을 너무 넓게 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그런 데 걸리게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일단 조세심판관이랑 유사한 성격이라고 규정하셨지만 저는 이걸 어떤 구체적인 점에서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

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세심판관제도가 이 제척기준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증거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것은 심판원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근거에 기준해서 조세심판관을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계신지를 여쭙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비상임심판관을 제가 알기로는 20~40명가량,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로 풀이 있는데, 그 비상임심판관들을 특정한 사건의 배석심판관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 비상임심판관들도 심판관마다 주심심판관에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배정돼 있는 인원들이 4명 정도 있는데요. 그 4명이 2명씩 2명씩 사건을 돌아가면서 맡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제척기간이 걸린다든지 회피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심판원에서 다룰 수가 없는 문제도 생기는 거지요.

○장혜영 위원 그게 어떻게 어려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사용인으로서 5년이 충분히 지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

○장혜영 위원 그건 되게 주관적인 기준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여기 밑에도 보시면 5년 기준이 있습니다. 39페이지 5호에 보시면 ‘이전 5년 내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여한 경우’ 그리고 또 6호에는 ‘이전 5년 내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에 속하였거나 현재 속한 경우’ 이렇게 해서 5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지금 풀이 한 40명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세심판관을 정하려고 그럴 때 그러한 제척·회피 사유 때문에 해당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니까…… 그 풀을 40인 정도

로 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국세기본법에 그런……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풀이 더 넓으면 그런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심판관을 위촉하기가 쉬울 텐데 풀이 한정되면 기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위촉을 못 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뒤로 미뤄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테니 풀을 넓히는 건, 내가 규정을 잘 몰라서 근거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풀을 넓히면 그만큼 사람들을 더 많이 위촉해야 되고 더 위촉하면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또 하나는……

○고용진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풀 속에 들어가면 무슨 고정급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런 분들을 한 달에 부르는 데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200만 원 정도, 비상임심판관들은 그 정도 비용을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들어올 때 주는 거 아니에요? 풀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요? 풀을 구성해 놓고 그중에서 배정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정을 하려다 보니까 제척·회피에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풀이 더 넓어지면 걸리는 사람들 숫자가, 걸려도 또 다른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더 넓혀 놓는 것이 얼마큼의 비용과 행정의 필요한 건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으니 넓히는 거는 방법이 아니냐, 얼마나 드냐, 그런 겁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거는 제가 오늘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고요. 다음에 다루실 때 저희가 심판원에서 한번 나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예, 그렇게 합시다.

좀 전에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도 사실 어떤 애로가 있는지 여기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런 애로가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고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풀을 넓혔을 때 어떤 사항이 있는지를 같이 보고.

사실 5년이 지난다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게 없어지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호하고 6호의 5년하고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의 5년하고는 같은 5년이라고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항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3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국세청장 등으로 하여금 그 내용이나 결과 등을 조세심판원장에 알리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위법·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리도록 해서 행정소송과 조세심판 간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심판법에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스에 있는 내용이 행정심판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현행법 81조를 80조의2로 옮기고 81조를 신설하고 있는데 현행법 81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용 조문을 같이 개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세심판과 행정소송 간의 일관성을 높여 가지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규정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고요.

다만 마지막에 지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된다는 거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같이 하지 될 조정하면 합니까? 같이 하면 안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같이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같이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쪽 제일 마지막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 관련된 사항도 같이 해서 나중에 안을 가져오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14항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4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역외거래 시에 장부 보존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다국적기업 간의 이전가격 조작에서 특히 이전가격이 문제가 되고 그때 이러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이전가격과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행법에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갖춰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내에 진출하는 다국적기업이 거래자료를 해외에 은닉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다국적기업의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과세당국이 국내에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자료에 한정하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에 따라 보관하는 장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증가하는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회피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라고 보여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해야 하는 장부와 증거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개정안은 역외거래 장부 및 증거서류의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국세의 부과체기간도 원칙적으로는 5년입니다만 역외거래는 7년으로 하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지금 현재 김주영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있는데요, 김주영 의원님 안은 정부안에 나오는 기간 연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이 주요 계약서 같은 것을 국외에 보관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자료를 해외에 은닉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회피행위를 조금 더 방지하려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역외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기간도 7년으로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유동수 위원 저 좀 궁금해서 여쭙보려는 건데요.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동수 위원 이전가격과세가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과세이고 추후에 이전가격에 대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다른 나라 사례, 미국이나……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주지나 기타 국제청장이 지정하는 데에 보관할 의무가 있고요.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척기간을 좀 달리하냐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기간이요?

○유동수 위원 어렵다는 이유로 이전가격에 관해서만 7년, 이렇게 달리하는 경우가 있냐고요. 조세체계의 문제인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해외를 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부과제척기간이 없고요.

○유동수 위원 미국은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없겠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일반은 5년이고 국외거래에 대해서는 12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4항도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개정안은 세법에 의한 질

문·조사권 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88조에 따라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세무조사의 질문·조사권 거부에 대한 행정질서벌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금액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수입금액 등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수입금액 등이 1000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어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한 금액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을 상향해서 질문·조사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세 탈루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첫 번째, 질문·조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행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과태료 상한을 5배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행 세법상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는 국제거래 시 자료의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행 부가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에서는 납세보전 등 세법상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2000만 원 이하로 부과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말씀대로 이게 거액의 세액 추징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2000만 원이다 보니까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려는 행태가 있어서 1억 원으로 올리려는 것이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 중에서 첫 번째 것, 과태료의 상세 부과기준은 하여간 영세기업 등한테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기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를 들면 현재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수입금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면 2000만 원이 되고요. 500억~1000억 사이면 1500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표가 있는데 그게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것이 2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소기업, 가난한 영세기업 같은 경우도 이것에 해당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한 것이 부가세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태료의 별도 기준에서 상한이 2000만 원이라는 것인데요. 부가세의 경우에도 질문·조사권에 관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세무조사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자료제출 거부가 되면 국세기본법을 적용해서 1억 원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한 부가세법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데 만약에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초대로 한 2000만 원, 부가세법에 규정한 것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차이가 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우선 기존 2000만 원 이하는 언제 그 상한이 정해진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2014년입니다.

○고용진 위원 2014년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10년 됐습니다.

○고용진 위원 10년이 아직 안 됐지요. 8년 됐네.

물론 취지는 알겠는데 수입금액이 1000억을 초과한 경우, 이렇게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5배로 늘리는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혼내주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알아서 정해요?

우리의 기본 원칙이 행정상 필요 또는 과세의 효율성 제고, 징수의 효율성 제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납세자 권익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적정하나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예요.

한 8년 됐으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로 볼 때 과태료가 너무 약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이걸 그렇게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 궁금한데요, 47페이지에 개정세 수효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과태료를 상향하면 이 정도 세수, 돈이 들어온다? 어떤 의미예요?

○전문위원 김경호 그만큼 과태료가 징수……

○진선미 위원 과태료 수입이라는……

○전문위원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저도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 납부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직무집행의 거부, 기피에 대해서도 좀 모호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학적 세무조사를 통해서 징세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과태료를 통해서 억압적으로 징세권을 확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2000만 원에서 갑자기 1억으로 올리는 건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이 아닌가, 오히려 기재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한 시대착오적 사고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관련해서 처벌이, 과태료를 많이 올려서 행정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한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우리 세법에 나오는 과태료 전체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어떨 때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렇게 5배나 올리면 5배의 효과가 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 정리를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때의 기준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위원장님, 이미 전문위원이 뒷부분에 ‘대부분 다 2000만 원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양경숙 위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같은 규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말고, 여기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29조, 에너지…… 그것 말고 과태료 전부 다 뽑아서 그 기준을 주십시오.

신동근 간사님.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법안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해 놓고 시행령에서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1000억 이상이면 1억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그래서 1억 원을 다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영세기업한테는 수입금액에 따라서 조금 부과하고 대기업 그다음에 외국기업한테는 상한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런 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불응하는 것이 훨씬 쌉니다,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는 게. 수백억씩 과세를 해야 되는데 자료도 제출 안 하고 불응하면 그게 더 싸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200억을 아끼는 사람이 1억이 아깝겠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과태료를 좀 높여 놓으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지금 관세법에도 수입품 가격을 결정할 때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재차 요구하면 2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인상을 하되 저희가 시행령에서 중소기업은 낮추겠다, 그러니까 1억 원을 다 과세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법에서 한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진선미 위원** 그게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자료제출 거부행위 자체가 1000억 원 기업이 한 것은 더 과중하고 100억 원 이하 한 사람은 덜 과중하고 그런 건가요? 과태료라는 것을 회사의 규모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현행도 시행령에 수입금액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다 20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그게 10년 전에 정해졌고 너무 약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인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보험업법이나 다른 법률에서도 그런 기피현상에 대해서는 한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세법이 너무 약한 겁니다.

○**진선미 위원** 보완해서 판단해 보지요.

○**배준영 위원** 실장님!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는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나서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5년 정도 과태료 부과 현황, 그러니까 금액 그리고 건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시행령상 세부 부과기준별로 최근 5년간 부과 건수 그리고 부과 액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저하고 비슷한 취지의 말씀이고.

다음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저는 상식 같은 얘기인데요.

물가만 순차적으로 오르고 여러 가지 세금만 순차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한꺼번에 5배가 올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과태료가 한꺼번에 이렇게 5배나 오른 예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왜 5배를 올렸냐 하면……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류성걸** 이렇게 하시지요.

관련되는 논의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관련되는 통계자료가 있어야 돼요. 지금 위원님들이 답답해하시는 게, 물론 49쪽에 나오지만 과태료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되는 자료를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장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부과된 관련되는 자료를 전부 다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국제거래 시에 자료 미제출이나 거짓자료를 제출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최근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포함해서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항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117162)

(16시03분)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1번 압류재산 직접매각 시 통지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류재산으로서 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을 각각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서 직접 매각하는 경우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채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과 가상자산업자를 통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중간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매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매공고를 하고 공매공고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채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매통지를 누락한 공매처분에 대해서는 무효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취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공고로써 공매통지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공매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시송달하여야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공매에 준해서 관할 세무서장이 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채납자 등에게 통지함으로써 채납자의 임의납부 등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소지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설명드린 대로 압류자산을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을 할 때 매각한다는 사실을 채납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 보존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2번입니다.

개정안은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3쪽입니다.

현재 국세징수법 시행령 53조에서는 압류재산 공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무부로부터 출입국사실증명 등, 그다음에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토지대장 등 그리고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공동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말에 국세징수법을 개정해서 부부 공유의 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근거가 신설됨으로써 그 배우자에 대한 행정정보가 필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국세징수법에 공매에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함으로써 부부 공유의 동산 및 유가증권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행은 전자정부법과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별도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대법원 측에서는 독립기관인 대법원장의 업무 협조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합당하고, 일반 건물이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달리 가족관계등록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의 법익이 있다고 해서 법률에 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표에 보시면 개별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공동 이용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는 법들의 입법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작성하느라고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한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54쪽에 ‘다만’ 해 갖고 ‘이렇게 보임’ 하고 난 뒤에 가능하면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 논의를 하면서 이제 행정부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다만 이러이러해 갖고 법체계

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차관님께서는 거기에 관련된 답변도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지금 설명드린 대로 부부 공유재산이나 또 상속재산을 공매할 때 가족한테 이런 사항들 관련 공매통지를 하려면 가족정보를 조회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족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다른 것들은 시행령에서 다 하는데 왜 가족관계증명서만 법률에 규정을 하고자 하느냐라는 것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대법원 측에서 ‘가족관계등록 정보는 개인정보의 법익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타 기관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제시된 대로 병역법이라든가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모두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점을 고려해서 저희도 그 사례에 따라서 법률에 규정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나요? 임의로 제출 요구를 했나요, 뭐 어떻게 한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시행령에서 했습니다.

○**신동근 위원** 시행령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시행령으로 했습니다.

○**신동근 위원** 아까 류성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데 대법원 측은 법익이 있어서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법체계를 보면 맞지 않지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불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니까……

○**전문위원 김경호** 현재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사실 시행령에 넣어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대법원에서 그 부분을 법에 규정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법에 규정해도 되겠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괜찮다 이런 말씀이 세요?

○**전문위원 김경호** 예.

○**소위원장 류성걸**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훈 위원** 정부 입장에서 그간에 시행령으로 다뤄 오던 걸 대법원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개정안을 낸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불가피한 개정안 같은데……

그리고 저도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취지인데, 전문위원께서 ‘다만’이라고 표현하고 검토의견을 달면 거기에 따라서 대안 또는 필요하다면 수정의견을 같이 좀 소개를 해 주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의견 없으시면, 특별히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법률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55쪽입니다.

개정안은 공매의 매각결정일을 개찰일로부터 현행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 박스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공매 관련된 사항들을 공고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고사항 중에서 매각결정기일은 공고한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7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매각결정 전 채납자가 채납액을 납부하여 재산권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7일 이내의 기간 내에 낙찰자의 결격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매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시에도 매각결정기일을 매각기일부터 1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국세기본법 심의하실 때 공휴일 관련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매각 전에 채납액을 납부해 가지고 재산권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겁니다. 지금 민사소송법에도 7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추려는 것이고요.

마지막 부분 역시 공휴일이 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니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3항은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여쭙보려고 했는데……

○소위원장 류성걸 죄송합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아니, ‘3일 이내’ 이런 제도가 존속된 기간이 얼마나 된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시작이 된 게요?

○진선미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아마도 공매라는 제도가 생기면서부터는 계속 3일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법안을 만들 때는, 무슨 청원이 계속 있었던 건가요? 어떤 취지의 경로가, 이렇게 연장하게 된 경로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보통 기간은 되게 엄격하게 하는 거라서……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대부분은 세법개정 수요가 과세관청—국세청, 그다음에 조세심판원, 다른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일선의 어떤 단체들, 뭐 여러 경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과세관청 또는 자산관리공사 이런 쪽에서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과세관청에서 건의한 걸로 봐집니다.

○유동수 위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왜냐하면 공매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매각결정을 한다는 게 사실은 공매 성공률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7일 정도 주는 게 공매 성공률도 높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중간에, 이 전에라도 채납자가 채납을 정리함으로써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선미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요.

전문위원님께 한 번 더 여쭙보는 게 우리가 이 기간이라는 건 되게 엄격하게 하는 거라서, 그러면 이런 유의 개정안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 건가요?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러면 의원 입법안이라든가 기존의 정부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경호 논의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존에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그걸 짧게 해서 얼른 공매 물건을, 채권을 확보하려고 했다가 좀 더 납세자의, 특히 민사집행법도 일주일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사실은 세법 규정들이 세법에만 독특하게 있다가 기타 법들에 맞춰서 뒤에 따라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선미 위원 어쨌든 잠정적인 의결인 거지요? 언제나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습니다. 관련되는 사항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선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쭉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요구했던 내용, 요청받은 것.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소위원장 류성걸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 관련되는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나중에 다시 또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국세징수법 관련된 사항은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661)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559)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5259)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514)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900)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288)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359)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171)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173)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405)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680)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852)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952)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120)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154)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314)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388)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441)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444)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501)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596)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711)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882)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143)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9)

(16시16분)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그리고 제9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27건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회서 소위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59쪽 1번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첫 번째 태영호 의원안은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종부세 1세대 1주택 공제가액인 11억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종부세 1세대 1주택 공제가액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려는 내용과 맞추어서 고가주택 기준도 12억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황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요건은 보유주택 수와 임대형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1세대 1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의 경우에만 월세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60쪽 검토의견입니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인 9억 원은 2009년 세법개정에서 정해진 것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과세 주택의 1세대 1주택 공제가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 종부세 개정으로 공제가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과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공제가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표에서 보시면 고가주택 기준이 2021년도까지 9억 원이고 종부세 기준이 11억 원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작년 12월에 개정돼서 1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 따른 고급주택은 9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공제가액을 12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같이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말씀드린 대로 최근 한 10여 년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공동주택으로 보면 거의 100% 가까이 올랐

습니다. 그래서 09년도에 지정이 된 9억 원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하려는 것이고요.

지금 전문위원 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정부 원안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 공제가액의 상향 조정이 11억, 12억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논의에 맞춰서 최종 결론을 내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저도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전문위원도 그렇고 또 정부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종부세를 다루면서 같이 다루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는 그렇게 진행의 묘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이 종부세 기준하고 연동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료만 조금 요청하고 싶어서요.

2019년 주택임대소득을, 소득세를 내고 있는 비율이 다주택자의 2.4%만 납부를 하고 있는데 최근 임대소득 분포 현황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다시 심사하기 전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지금 위원님들 또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당연히 제기하신 또 요구하신 위원님께 먼저 드리고, 전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는 보면 ‘이미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효율적인 소위 운영을 위해서 자료는 당연히 요구하신 위원님께 먼저 드리고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유동수 위원 저도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저는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택가 상승을 보면 이른바 캐피털 게인(capital gain) 때문에 갭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도. 그리고 해외의 세제를 볼 때 주택 소유에 대한 혜택은 거의 거주에 맞춰져 있습니다. 소유를 하나 했다, 1세대 1주택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혜택을 거의 안 주는 방향으로 국제 조세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주택을 쓸데없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 거주하지 않으려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굳이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 때도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양도세 과세 주택 1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2억은 실제 매매가 기준이거든요. 실제 매매가 기준으로 보면 9억 공시지가하고 거의 유사한 금액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정책들을 1세대 1주택이나 세제혜택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해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그래서 과거에 9억으로 한 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11억으로 올려야 된다고 이런 의견에는 조금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소유에 대한 과세입니다. 소유나 보유에 대한 과세이고 이것은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조금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공시가격 12억하고 또 시가 12억하고는 분명히 다른 건데, 지금 숫자만 이렇게 하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종부세법이 개정된 게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니다. 종부세 공제가액을 11억으로 올렸는데 다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12억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체계가 안정적이고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훨씬 더 내릴 겁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종부세 관련해서는 나중에 종부세 때 하도록 하고 지금은 고가주택 임대소득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 관련된 사항하고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제실장,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거래가하고 기준시가 차이, 그것은 임대소득 기준 월세 고가주택 기준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하고 물론 주택가격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옛날에 03년에는 두 개 다 6억이었고 09년에는 두 개가 9억이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런데 양도세는 지금 12억이 됐으니 저희는 12억으로 하자는……

○유동수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차이는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같았다고 해서 그게 다 맞다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고가주택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나 다른 것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 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변경 설정. 1항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개정안은 기부금의 명칭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지난 2020년 세법개정에 삭제했던 기부금 명칭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2쪽입니다.

기부금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전 법정기부금인 100% 한도 기부금은 국가, 지자체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소득의 10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 한도 기부금은 종전의 지정기부금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등 공익성 있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으로 30%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있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의 10% 한도로 필요경비

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부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20년 세법개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 온 명칭을 삭제하면서 대체 명칭을 부여하지 않아서 실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기부금 명칭 재설정을 통해 편의성 및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종전 명칭으로 회귀하는 것보다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 기부금 명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도 똑같이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지금 즉 설명드린 대로 이게 종전 명칭이 없어짐에 따라 납세자나 세무공무원들의 불편함이 있어서 명칭을 설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잠정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대비 명칭 변경, 3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개정안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접대비 명칭을 변경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송언석 의원안은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구간별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병욱 의원안은 접대비 명칭을 ‘대외활동비’로 구분하고 정부안은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접대비라는 명칭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세법·조특법에도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접대비 기본한도는 일반기업이 1200만 원, 중소기업이 3600만 원으로서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 기본한도를 종전 2400만 원에서 50%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접대비 명칭은 1968년부터 사용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접대비라는 명칭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접대비 명칭과 관련해서 접대비 용어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3.2%로서 변경 필요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활동촉진비 또는 대외활동비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문구상으로 보면 한도 없이 손비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와 광고선전비 등이 포함되는 등 현행 접대비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출 여력을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접대비의 주된 지출처로 예상되는 음식점업 등에 대한 매출 증대를 통해서 위축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접대비 지출이 과다해질 경우에 오히려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의 경우에 정부안은 준비기간 등을 이유로 202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지금 말씀대로 접대비라는 명칭이 워낙 오래된 명칭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문제에서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제안한 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개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고.

다만 명칭 변경 적용기간을 1년은 유예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게끔 1년 유예는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덧붙이신 것은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한도를 상향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20년도에 중소기업 기본한도도 상향을 했고 21년도에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도 인상을 해서 접대비 규정을 많이 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기업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소비위축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1년 정도는 20년도의 경우와 같이 접대비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요.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여기 보고해 주신 것처럼 1968년부터 사용이 돼서 계속 이용되어 오고 있는 개념과 용어를 굳이 이렇게 완곡어법으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신 것처럼 접대비에 대해서 우리가 손금 산입한도를 두고 있는 입법 취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뀌야 된다는 주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특히나 ‘기업활동촉진’ 이렇게까지 규정하기에는 접대가 기업활동을 얼마나 촉진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규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는 바꾸자는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만 충분히 바뀌야 될 이유가 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접대비를 업무추진비로 해서 상당히 올려준 거거든요, 지금 퍼센티지를 보면. 사실상 0.03을 0.05, 0.1을 0.3, 0.3을 0.5, 이렇게 반 이상 올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1년 정도…… 지금 기업도 상당히 위기를 겪고 있고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상향시켜 주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사실 이 문제는 꽤 오랜 기간 논의가 돼 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의 정부 또 지금의 여당이 계속 반대해 왔다는, 그 이전에는 반대의견들을 계속 유지를 했었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용어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접대비라는 것을 그러면 적극 권장하는 건가요, 많이 쓰라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진선미 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그런데 접대비를 ‘업무추진비’ 이렇게 하면, 업무추진은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업무추진비입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업무촉진

비 이렇게 하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의 범위라고 인식하게 하는 측면도 있게 되는 거여서 상당히 용어와…… 기존에 우리가 죽 추진해 왔던 정책의 방향하고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법인 수가 약 80여만 개 정도 증가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접대비 지출이 3조 원 정도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접대비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 부분이 차관님이 얘기하시는 기업의 활동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저희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들도 미리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집단별로 여론을 수렴한 자료들이 있다면 그것도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은 21년에 3.2조 원이고요 중소기업은 8.2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11.4조 원 정도 됩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위원장 류성걸 고맙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명칭 변경과 또 아까 양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요. 한시적인 상향 조정, 이 부분인데요.

유동수 위원님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 결국은 명칭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게 회계 처리할 때 회계과목에 이제까지 접대비라고 계속 들어가 있던 말이지요. 물론 바뀌어야 될 사항이면 바뀌어야 되지만.

그래서 실제로 적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의견수렴 한번 해 보셨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소위원장 류성걸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명칭에 관련해서 의견수렴 결과 자료 정리된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저희가 1년 유예한 이유가 기업회계기준도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하고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꾸면 그 1년 유예기간 안에 회계기준원도 용어를 바꾸겠다, 이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추진비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공무원 포함해서 공공기관의 업추비, 특활비 그다음에 특정업무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기업업무추진비든지 사업업무추진비든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업무추진비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업무추진비와 비슷한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기밀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때 전부 다 없애 가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8, 1999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때 다 없어졌는데, 어쨌든 명칭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저는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쓰던 명칭하고 그런 관계를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근본적인 의문, 왜 바꾸나, 안 바뀌도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그 속에는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했을 때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명칭에 대해서 죽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양경숙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1968년부터 접대비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50년 정도 된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양경숙 위원 그런데 왜 50년 동안 접대비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했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을 것이고 기업들은 바뀌달라는 요구를 많이 해 왔을 것 같거든요. 그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왜 이렇게 규모가 큰지 지금 답변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현재 11조 4000억 원 정도를 접대비로 쓰고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이 법을 개정해 준다고 하면, 지금 개정해야 될 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도 개정해야 되고 법인세법도 개정해야 되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도 다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안대로 이렇게 상향을 해 줬을 때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접대비를 얼마를 더 쓰게 되는 겁니까? 그걸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5조 이상……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정부안은 증액시키지 않습니다.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양경숙 위원** 송언석 의원안대로 한다면, 지금 퍼센트를 제시한 개정안은 송언석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인데 그럴 경우에 현재 접대비보다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것은 기업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양경숙 위원** 아니요, 지금 전체로 대기업이 3조 2000억 쓰고 있고 중소기업이 8조 2000억을 쓰고 있다면서요.

송언석 의원안에 의하면 100억 이하는 0.3%에서 0.5%로 상향 조정하고 100억 초과 500억 이하는 0.2%에서 0.3%로 상향 조정하고 500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0.03%에서 0.05%로 상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가 더 접대비로 들어가게 되냐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이것은 한도이기 때문에 접대비를 적게 쓰는 기업은 한도를 늘려도 똑같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래도 대략적인 추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제가 알기로는 큰 대기업들은 이 한도를 못 채우고 있고요 작은 중소기업들은 한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한 3000억 원의 세수감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이.

○**양경숙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세수를 3000억 줄이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접대비를 올려주는 거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러니까 한도를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 내가 조금 더 쓰더라도 이게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소비를 좀 더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 효과를 보고 한도를 늘려주는 겁니다.

○**양경숙 위원** 이걸 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이게 부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시대가 좀 변했고 이런 건 있는데, 사실 명칭이라는 게, 이름이라는 것은 현상이나 사물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이름이나 현상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것을 이름으로 해야지 그럴 듯하게 예쁘게 만든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대비’ 하면 상대방에게 뭔가 접대하는 걸로 명확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하면 우리 팀한테 업무추진을 위해서 성과급을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팀끼리 서로 격려할 수도 있고,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기업활동촉진비’면 활동 촉진을 위해서 경품을 주거나 무슨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럴 듯하기는 한데 뜻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접대비’ 하면 명확한데 그걸 굳이 왜 바꾸려는 부분이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취지처럼 뭔가 긍정적으로 되면서 접대와 비슷한, 정확하게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좀 찾아 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이 명칭을 바꾸더라도 법에는 접대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그대로 유지할 하는 거고요 간판만 바꾸는 겁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내용이 똑같은데 이름은 바꾸겠다, 간판 바꾸겠다 하면 뭐 때문에 바뀌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것은 대외적으로……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도, 아까 장혜영 위원 말씀도 그렇고 이걸 바뀌서…… 부정적 이미지다, 접대라는 게 말하여 대접하는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취지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

듯이 의견수렴 절차라든지 관련되는 그게 순서가 죽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소위원장 류성걸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접대비 명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접대비를 50년 동안 묶어 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접대비라는 어감이 사실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명칭을 통해서 쓰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쓰지 말라고 묶어 왔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은 세정이 굉장히 투명해지고 또 투명해진 가운데 정상적으로 업무집행을 하면서 업무추진도 하고 접대비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양성화시키고 또 손금 산입을 늘리고 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로, 양지에서 올바르게 쓰게 해서 기업활동을 촉진한다, 이런 취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대비라는 말이 분명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50년 전의 이미지를 탈피해서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활동을 증진한다, 그런 건전한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논의해 봐도 그러니까 다음에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자료, 의견수렴한 자료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기본적으로 접대비라는 내용 자체가 기업 지출의 본질적 성격이 뭐냐,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보면 접대비라는 용어가 좀 시대착오적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안에서 업무추진비로 우리 행정에 쓰는 용어, 기업에서 쓰는 용어도 바꿀 필요가 있고, 행정에 쓰는 용어를 업무추진비라고 쓰고 있는데 오히려 김병욱 의원의 대외활동비나…… 기업활동촉진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성격의 용어가 지금까지 기업에서 지출해 왔던 접대비 명목 지출의 근본적인 용도에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변경은 원칙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논의하도록 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퇴직소득세 관련입니다.

김상훈 의원안은 퇴직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이면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자 하는 것이고 배준영 의원안은 퇴직소득 중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받는 50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퇴직소득공제 중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경감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7쪽 현황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에 대한 급여를 의미하며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별개로 세액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에 의해서 과세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장기간 형성되는 소득인 점을 감안해서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여 환산급여를 산출하고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이후에 기본세율을 곱해서 세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속연수공제는 90년도 도입 이후에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환산급여공제는 2015년까지는 정률공제 방식이었다가 2016년 이후에는 소득에 비례한 차등공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68쪽 검토의견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명목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실질소득의 증가가 없이도 세부담이 확대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퇴직공제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20년 전체 퇴직자 인원은 329만 3000명 수준이고 이 중에서 5000만 원 이하의 퇴직급여액을 받은 사람이 314만 명으로 95.4%에 달하고 있어서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을 수령하는 대다수의 근로자가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비과세제도를 설계할 때 근속연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득자가 단기간 일하고 5000만 원 이하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근속연수 10년을 기준으로 5000만 원 비과세를

한다고 하면 퇴직소득세가 146만 원에서 갑자기 0원으로 급격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정부안에 따라서 퇴직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경우에 세수감면액이 약 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퇴직자 지원을 위해서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갖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김상훈 의원님께서도 안을 주시고 배준영 의원님께서도 안을 주셨습시다만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마지막에 보고드린 대로 단기간 일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근속연수 10년을 기준으로 절벽현상이 나타나는 점이 있어서 그래도 근속연수를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변하는 정부안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먼저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 배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고령화사회로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고 또 퇴직 후의 경제활동에 대한 여건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저는 퇴직소득세 감면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66페이지 도표 자료의 세수효과를 보면 정부안이 일단 가장 감세효과가 큰 걸로 나오네요. 그래서 정부의 세수부담만 없다면 저는 정부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퇴직소득세 감면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이렇게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한다기보다는 좀 차등을 줘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냈는데, 정부안을 보면 이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세수가 너무 줄어서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게 아마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자료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1조 1000이 아니고 이걸 5년간 1조 1000이고요, 1년에는 2200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지요? 좀 이상하더라.

○소위원장 류성걸 신동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

○신동근 위원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퇴직자들을 배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퇴직금을 받는 것보다는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맞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보다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이라든지 그쪽 부분으로 유도하는 게 저는 더 정책적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도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퇴직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인데 세금감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적인 귀착이 존재하는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지금 제출되어 있는 안들을 보면 그래도 대체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연공급제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퇴직금이 없는 기타소득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사실상 약간 불평등한 혜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장기근속한 퇴직소득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노후가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이 어떤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의 노인정책이라면, 고령인구에 대한 정책이라면 퇴직소득에 대한 혜택보다는 차라리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소득, 돌봄 지원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훈 위원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급여소득을 받지 못하지만 연령과 관계없이 계속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분들이고 급여소득자는 정년이 되면 그때 이후부터는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딱 끊겨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면 급여소득자의 퇴직 시에 가능하면 감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후생활 설계에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이 법안의 취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차관님, 혹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지금 신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정부도 이걸 연금으로 바꾸게 되면 퇴직소득세보다 60~70% 정도만 과세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확대가 되더라도, 이 공제를 확대하더라도 똑같이 되기 때문에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인센티브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최근 들어서는 기그(gig) 노동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보험도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부분들은,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재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걸 좀 별개로 봐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상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배준영 위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꼭 필요한 제안이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가 5년, 6년, 11년 이렇게 해서 공제액이 정해졌는데 이게 언제 정해진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90년도에 결정……

○배준영 위원 90년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배준영 위원 꽤 오래전에, 30년 전에 정해진 거네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정해진 것은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봐서……

모르겠습니다. 단계 같은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공제액은 좀 변화가 있어야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지금 김상훈 위원님 안하고 배준영 위원님 안하고 정부안 이렇게

돼 있는데 김상훈 의원님, 배준영 의원님은 비과세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하셨고 또 근속연수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정부안하고 통합해서 할 부분이……

○배준영 위원 예, 정부안하고 통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일단은 아까 위원님들이 퇴직연금과 연계해서 한다는 부분,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 노후소득 설계가 기초연금 있고 국민연금 있고 퇴직연금 있고 그다음에 개인연금 있고, 직역연금까지 포함해서 이런 걸 다 논의하려면 사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두 분 의원님들 안하고 정부안하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퇴직연금이나 또는 세금감면 관련해서 장혜영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해서 다음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유동수 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근속연수 확대하는 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설계를 하실 때 30을 100만 원으로 하고 또 50을 200으로 하고 250, 300으로 한 근거들이 있는지, 이렇게 연도별로 금액을 확대하셨는데 이런 근거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예, 물가상승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 디테일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안을 통합해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퇴직연금하고 세수감소 또 좀 전에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숫자만 던져 놓을 게 아니라 이렇게 모수 변경하는 것은 근거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해 주셔야 쉽게 동의를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그리고 아까 신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퇴직연금은 9번에 있습니다. 고용진 의원안하고 정부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동근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냐, 내가 그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연금 세액공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그 방향으로 유도하는 길이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70쪽입니다.

개정안들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인상하고 소득공제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개별 의원님들 안에서는 한도 인상과 소득공제율 인상이 있고, 정부안은 공제율은 현행과 같이 하고 공제한도만 상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1쪽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제도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과 합산해서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00년도 세법개정을 통해 당초 180만 원이던 공제한도액이 300만 원으로 증가되었고 2003년 이후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인원은 2020년 기준 약 89만 3000명이고 공제액은 약 1조 3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72쪽 검토의견입니다.

최근에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2000년 이후에 20년 이상 300만 원으로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으므로 한도액 상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73쪽입니다.

공제한도의 상향만 이루어질 경우에 현재 공제한도 상한인 300만 원을 적용받고 있는 약 30%의 근로자가 공제한도 상향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말씀드린 대로 정부안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임차 차입금을 올리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평균 공제액이 한 147만 원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공제한도 초과자가 3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공제한도를 400 정도로 올리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소득공제율 40%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좀 있으시지만 저희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 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라든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라든가 하는 유사한 것들의 소득공제가 있는데 이것들이 최고가 다 40%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설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정부안대로 심의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아마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위원님들 가운데에서는 저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앞선 법안 얘기할 때도 그랬었지만 저는 세금 감면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굉장히 재정소요가 많이 필요한 시기에, 물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된다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논의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전세자금대출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간주하시는가에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한 저희의 입장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건 누진세제하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양상이니까 원리금 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적절한 지원

형태인가라는 데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지지하는 종류의 법안인데요, 집값을 공공이 계속 지탱해 주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강화하느냐에 있어서 전세자금대출 구조를 과연 이대로 두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 청년들이나 이렇게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너무나 공적인 책무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차라리 어떻게 우리가 공공주택 정책을 변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여야지 이렇게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전체적인 틀거리에서 봤을 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 위원님께서 그런 개인적인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현장의 현실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기 기재부차관님 계시지만 전세자금대출제도가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보면 서민을 집값 상승에서 그 혜택을 완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세법적으로 접근한다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세제혜택보다는 월세공제를 과감하게 넓혀주는 게, 그리고 월세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월세공제를 100% 소득공제로 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고 현재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상승하는 고금리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근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 요즘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여서 저는…… 나중에 고용진 의원안이 올라오나요? 어쨌든 월세화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고용진 의원

안도 저는 가능하면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또 전세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렵고.

그래서 정부안은 400만 원으로 하고 공제율은 현행과 똑같이 40%로 하자는 소리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좀 더 쓰지요. 뭐 이렇게 박하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김영진 의원안이 제일 많은 혜택을 주자 이런 건데 저는 여러 의원님들 평균치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공제 퍼센티지를 다만 10%라도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차관님, 실장님, 공제율을 이렇게 했을 때 한도 때문에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통계 가지고 계시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1인당 평균 공제액이 147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평균은 그렇고, 한도 때문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한도 초과자가 30%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도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은 한도를 늘려줘야 이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아무리 공제율을 높여도 한도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쪽 말씀 중에, 저도 냈습니다만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산을 아주 짭 해 갖고 420, 전부다 400, 300, 60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2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아까 장혜영 위원님 말씀 저는 진짜 가슴에 와 닿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집을 사서 자기 집에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당연한 방향이겠지만 그렇게 못 하는 지금 현실에서 도와라드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 주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어느 안보다도 이걸 전부 다 통합해 갖고 가장 바람직한 숫자를 한번 제시를 해 주세요. 괜찮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공제율이 40%라는 건 아까 초반 말씀대로 주거안정과 관련되는 다른 공제들의 최고가 다 40%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다른 제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한도가 차서 아무리……

여기의 공제한도액이라든지 이런 걸 두 개……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러니까 공제한도는 높이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봐서 숫자를 이렇게 해도 결국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해서 숫자를 아무리 해 봐야 그러니까 그 전체안을 통합해서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해서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74쪽 소득세 과표구간 및 소득세율 조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49년에 소득세법 제정 시에는 17개의 과세표준 구간에 최고세율이 65%였습니다. 이것이 2000년대까지 최고세율이 계속적으로 인하되는 추세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 종합소득금액 8800만 원 초과 구간이 세분화되었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1년 8800만 원 초과 35%에서 2012년에 종합소득금액 3억 원 초과 38%로 인상됐고 14년에는 최고세율 구간이 3억 원 초과에서 1억 5000만 원 초과로 인하되었다가 17년에 다시 5억 원 초과 40%, 18년에 5억 원 초과 42%로 최고세율이 인상됐고 2021년부터는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76페이지 표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8800만 원 이하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8800만 원 이하 과표구간은 2008년부터 적용되던 것으로 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의 3고 현상을 반영해서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77쪽입니다.

다만 현재 37.2%인 저소득 면세자의 비율을 더욱 높여서 소득세 과세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가 있고 과세표준 상위구간에 있는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주요 선진국 대비 소득세 세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세율인하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안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총급여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함으로써 세부담에 변화가 없도록 개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수감소 효과가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의원발의안에 대해서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및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 재정 확보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면세자 비율이 37.2%에 달하는 상황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해서 특정 계층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는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과세의 기본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2016년 이후 계속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해 온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로 실질소득 증가가 없음에도 과세구간 상승으로 증가하는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은 생계비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과세표준구간의 기준금액을 변화시키고 있고 캐나다는 완전 연동 소득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3년마다 한 번씩 물가상승 목표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소득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계속 소득세 과표구간이 상승함으로써 소득세 저율구간이 확대되어서 고소득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면세자 비중도 더욱 높일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호주와 영국 등 일부 국가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한 사례가 있고 일본은 세수감소 등의 우려로 검토 후에 도입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과 같이 8800만 원 이하 저율 과표구간을 개정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소득세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마지막에 뭐라고요?

○전문위원 김경호 양도소득세의 세율도 지금 이 소득세의 세율과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것은 기준세율이 바뀌면 당연한 거지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전문위원 김경호 예,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것은 기준세율이 바뀌잖아요.

정부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이번에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소득 하위 2개의 과표구간만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소득세가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비중이 좀 낮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세자 비중이 한 37%이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 낮추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과세형평, 재정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안을 종합해서 분류를 해 보면 소득세율을 인하하자는 의견들이 있으신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외국에 비해서 낮은 소득세 부담 수준이고 면세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더 이상 낮추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소득세 과표구간의 조정폭을 좀 조정하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안을 좀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양경숙 의원님 안을 제외하고는 세수감이 가장 적은 것이 정부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수감 효과가 크면 클수록 사실 고소득자의 세부담 경감폭이 더 커진다는 것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득세 세수 비중이 굉장히 낮은데 계속해서 물가연동을 해서 구간을 올리게 되면 면세자 비중이 점점 커진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결국은 고소득층한테 조금 더 많은 면세혜택이 주어진다라는 단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자의 세율 인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최근 들어서 45%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올리는 것은 국민적으로 부담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의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정부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양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다음 고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 소득세에 대해서 과표기준을 조금 조정하자는 건데,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금 높이자라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많은 의원들께서 다양한 개정안을 제출하신 상태라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낮추자라는 정부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소득세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가장 낮게 감세가 되는 부분을 선택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고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 차관님, 아까 말씀대로 하면 선진국 대비 우리 조세수입 중 소득세 비율이 아직 낮다, 그런 얘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고용진 위원 그런데 왜 이 소득세 개편안을 제출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아무래도 최근 기세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혜택을 넓혀 주자는 의미에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얘기한 전제하고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개정의 방향으로

가면. 소득세율이 전체적으로 포션이 작으니까 그걸 더 키워야 된다는 걸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지적이 당연히 관련 전문가나 학계에서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 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세체계를 손을 봐야 되고 하지만 시대의 변화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큰 시대의 변화가 뭐겠습니까? 양극화, 빈부의 격차거든요. 지금 과거와 똑같은 잣대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걸 뭐 논쟁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차관님이나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과거의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하지는 말자는 거고.

소득세는 손을 봐야 되는데 정부의 의도는 약간은…… 저는 그렇게 순수하게 보지 않아요. 법인세 등의 감세안을 들고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소득세 부담을 같이, 이 두 개를 연동해서 갖고 나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순수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법인세 부분은 이제 법인세대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물가를 본다고 그러면 2008년도 8800만 원 구간 만들면서 세율 정하고 한 이후에 물가가 지금까지 한 30%는 올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소득이 준 거예요, 그것에 비춰 보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 줄 거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안을 보면 소위 근로소득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너무 미약한 거예요. 전체 정부의 세수감은 제법 큰데 체감하는 우리 국민들의, 납세자들의 체감 비율은 굉장히 낮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왕 소득세를 손을 대려면 어느 정도 그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가 가져온 1200~1400 구간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제 안대로 1500~1600 정도로 우리 과세표준을 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문제는 소위 면세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면세자가 세금 안 내고 사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각종 소비 관련된 세금을 내고 여러 가지 세금을 내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단순히 면세자로만 분류할 거냐도 논란이 있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1200만 원 미

만 과표, 이분들은 감세혜택을 전혀 못 보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것은 다른 방안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부의 대안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세율을 낮춰줘야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6%에서 5%로 낮춰야 감세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세수감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정부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 됐든 최하위구간의 과표를 정부안에서는 어느 정도, 1600만 원 정도까지 상향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정부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저도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향후에 조세체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각 세가 담당하는 포션을 보면 사실 근로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지갑처럼 투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또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라든지 근로소득세를 높이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저는 좀 고민의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정부안처럼 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게 좀 단순화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물가연동을 주장합니다 마는 우리나라는 공제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도 결론을 내려 보면, 사실은 이번 정부안을 보면 제일 혜택을 많이 받는 부분이 8800만 원 이하부터 이쪽 중간층들이 제일 혜택을 많이 받아요. 면세점 이하 37%는 아예 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감세를 하고 지출규모를 줄이면 지원금이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지요, 간접적으

로 보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면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저는 정부가 낸 안 자체의 어떤 전반적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고요.

다만 고용진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최하위 부분, 6% 부분의 구간은 1400보다는 1500 내지는 최소한 1600 정도로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정도에서 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정부안을 보면 약 2조 8633억 원의 감세를 하게 되는 안입니다. 저는 사실 걱정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가 이렇게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이 될지……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성장률을 4%, 5% 올린다는지 아니면 미국에서는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라든지 IRA 그다음에 일부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데 약 1000조 가까운 재정투입을 결정하면서 부자들에게 대한 횡재세라든지 부유세라든지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 소득세도 미세조정을 넘어서서……도대체 그러면 이 정부는 세수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소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중의 하나가 65세 이상 70%한테 기초노령수당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그게 한 18조인가요?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홍영표 위원 제가 알기로 한 18조 되는데 그게 한 800만 명 중에서 560만 명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새로 기초노령수당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77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700만 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2030년 가면……

또 기초노령수당도 30만 원이 적다, 어디에서는 지금 40만 원, 50만 원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8조 들어가는 것이 한 36조가 되는 게 내일모레인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법인세다 뭐 정부에서 계속 깎아주겠다는 얘기만 들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 얘기했지만 올해 한전 적자가 최소 30조~35조 정도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기료도 일부 올려야 되고 이제 올리게 되면 영세한 가구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금, 보조금을 준다는 거 그것도 안 되면 사실 다른 나라를 보면 재정을 투입해서 부실화를 막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가면 국채 발행해 가지고 메꾸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한전을 이렇게 부실화해 가지고 결국은 민영화의 발미로 삼아서 발전자회사들 민영화, MB 때 하고 싶었는데 그것 못 했잖아요. 그걸 하려고 이렇게 하나…… 그러면 온통 돈 들어갈 게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도 어마어마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감세하는 것, 이렇게 나가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정말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재정추계를 해 봤을 때 당장 내년 소요되는 것 또 내년에 경기가 아주 나빠지면 추경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 어떻게…… 국채로 할 생각입니까? 어쩔 생각입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큰 그림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거나 걷지 않겠다, 이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정부의 전체적인 재정과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은 크게 봤을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하면서 결국은 중장기적인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비전 2050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내적으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재정의 안정성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차례, 아마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다 아시겠지만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실 정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민간의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그 부분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재정이 좀 더 확충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은…… 그걸 가지고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절대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과거에도 한전이 어려울 경우에는 결국은 정부재정이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그렇게 하고 결국은 전기료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소위원장 류성걸 차관님, 관련되는 부분 요약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전체 틀 속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할 하는 내용이지만 소득세 관련된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입법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또 다른 위원……

장혜영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어요.

○장혜영 위원 저 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오늘 법안 심의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 정부가 바람직한 조세와 재정의 어떤 장기적인 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이 큼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가 굉장히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산업전환부터 시작해서 미·중 갈등을 포함해서 국제적인 변수들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기후위기 마주해서 산업전환을 하고 또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저출생·고령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큰 재정소요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게다가 이렇게 소득세 세수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왜 인플레이션 증세를 포기하는가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증세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소득세에 있어서 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아주 명시적인 조세 저항도 없는 상태로 재정을 위해서 소득세 세수를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상황임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재정소요가 필요한데 왜 지금 이 순간에 소득세를 이렇게 개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시는데 누진세제에서 이렇게 소득세 과표 조정을 하는 게 고소득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이런 안을 내놓으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도 중·고소득자라고 분류할 수 있는 연소득 8000만 원 정도가 제일 큰 이익을 보고요. 그런데 사실 정부 개편안이 가장 완화된 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나머지 감면안들의 경우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절대액을 기준으로 보면 저소득자의 10배에서 20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고소득자 감면 절대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 조세감면 방식이 이 소득세 개편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는커녕 격차를 더 벌리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표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저임금에 머물게 되는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의 혜택은 매우 작지만 연공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임금상승을 보장받는 고임금 노동자들한테는 혜택이 매우 커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바람직한 소득세상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그래도 저는 세금에 있어서 우리가 합의하는 부분은 국민개세주의였다고 생각을 해요. 진보의 경우에는 적어도 세금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세금 내고 그것에 대해서堂堂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식의 세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왔고, 보수에 있어서는 세금을 고소득층만 내는 게 말이 되냐, 저소득층도 세금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적어도 기본적인 가치와 세제체계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쪽에서 다 저소득층 비과세를 도리어 확대하자는 주장을 함으로써 이런 국민개세주의에 대한 원칙을 사실상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재정이 해야 하는 역할을 조세감면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저는 있어요. 누진세제 과표 조정이 고소득자에게 큰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실제로 지금 저소득자들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런 형식의 소득세제 개편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나마 동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양정숙 의원님 안 정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양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지금 홍영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또 장혜영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부가 공평과세나 재정의 역할에 대한 큰 방향에 있어서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고 소득이 많은 곳에 더 많은 과세를 하고 이게 공평과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억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대해서 더 많은 과세를 하려는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요. 경기가 위축되거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재정의 역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는 앞으로 긴축재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부자들한테는 오히려 감세를 막 대폭적으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세도 대폭 감세하고 종부세도 대폭 감세하고 소득세도 고소득자들에게 대해서는 오히려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약간 조정하는 정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 다 부자증세를 하고 있어요. 부자증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다 세금 깎아 가지고 어떻게 국가 운영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줘서 예산규모를 앞으로 더 축소해 가지고 가겠다라는 게 지금 정상적이고 바른 방향입니까?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국민들의 수요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세금을 적게 걷고 깎아주고 해서 적은 예산으로 앞으로 국가와 정부를 운영해 보겠다, 그러니 동의해 달라,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재정의 역할이라는 게 경기를 부양시켜 줘야 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국가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 줘야지요. 그래야지 민간도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도 있어야 되고, 자원의 재분배를 정부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소득세에 있어서도 정부가 이 여러 안 중에서 그래도 제일 적게 감세한, 정부안은 2조 8633억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고소득자들에게 대해서 세율을 높여서 오히려 충당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저기서 다 세금 깎아주고 뭘로 운영하려고 하고 뭘로 이 경제위기를 타개하려고 하세요?

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하고 있고 전 세계의 재정정책이나 조세정책의 방향하고도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류성걸 정리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실장님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1200만 원을 1400으로 올리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수감이…… 저희도 그걸 다 해 봤거든요.

○고용진 위원 1400을 1600.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아, 1400을 1600으로 올리자고 하셨는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 세수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 하지만. 그래서 그걸 검토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정숙 의원님 안대로 세율을 올리는 것은, 저는 소득세율은 50%는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벌었는데 국가에서 50% 이상 뺏어 가면……

○양정숙 위원 아니, 안 넘었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아닙니다. 이견 지방세가 또 4.6%가 있고, 지금도 45%인데 지방세가 4.5%니까 49.5%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험료 이런 게 있으면 지금도 5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 벌었는데 국가에서 더 뺏아 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로의욕이 줄어든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혜영 위원님께서 바람직한 조세상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정부는 경쟁력

있는 조세체계를 만들자, 세율을 단순화하고 기업투자를 늘리고 또 해외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규제적인 성격의 조세제도를 축소하고 선진국형 조세체계를 만들자,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지금 세계에서 톱10 국가인데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에 맞는 조세체계를 갖추자 이겁니다, 우리의 상이.

그리고 소득세도 국민개세주의가 좋은데 앞으로 저소득층 면세자들을 축소하려면, 그냥 과표 구간을 줄이면 굉장히 조세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면세비율이 축소되도록 그쪽은 가만 놔두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계속 축소돼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차관님과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세제개편에 관련된 큰 틀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기재부 내에서 반드시 기본적인 방향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는지 큰 틀을 만들고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또 조금 전에 세제실장님이 이 정부가 가야 될 그런 큰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면서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과세표준구간과 소득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막론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안을 내 주셨고 정부안도 별도로 이렇게 발의가 돼 있는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조세감면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은 감세정책을 어느 정도는 펼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급여 소득자들에게도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이 발의한 각 개정안들의 절충점을 찾아 가지고, 그냥 무작정 보류하기보다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일정한 감세기조를 밝히는 그런 안이 협의가 돼서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공통적인 게 있어요. 더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세율을 높이고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세율을 낮춰주는 그런

기조는 각 의원님들 안이나 정부안이나 대동소이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조세소위를 할 때 가능하면 정부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각 안을 참조해 가지고 이런 정도로 세율을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안을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아마 위원장께서 보류한다는 것은 이게 혹시 무한정 보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훈 위원 어느 정도 시기를 정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김상훈 위원 말씀하셨듯이 이 관련해서 전부 다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던 게 앞으로 소득세제가 어떻게 가야 되고 또 소득세제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국가재정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하고 사실은 전부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큰 틀을 보면 이게 한없이 늘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되 소득세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틀은 나중에 밝혀주셔야 돼요. 그것도 첫 단계로서 이렇게 한다, 아니면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어야 이 정도 하면 다음 단계가 어떻게 가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포함해서 다음에 관련되는 자료를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질의 같은 건데요, 질문 한번 드릴게요.

아까도 구간 얘기를 했는데 구간을 설정할 때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2011년도에 8800만 원 초과 35% 이렇게 만들고 이럴 때 그 당시의 8800만 원은 전체 종소 납부자 중에서 몇 %의 구간에 있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1200만 원의 소득자는 전체 종소 납부자 중에 몇 % 정도의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세율을 적용해 줬다, 그렇게 됐다면 그런 원칙에 맞춰서 지금 변경하는 데 1400만 원으로 올렸다면 지금 1400만 원이 그 당시에 정했던 구간의 원칙에 부합해서 총 종소 납부자 중에 2011년 1200만 원 결정할 때의 비율에 맞게 해 보니 지금 1400만 원이더라 이렇게……

예를 들면 한전에서 가정용 전기세에 대한 구간을 설정할 때 처음에 이랬다는 겁니다. 70년대

에 냉장고 하나, TV 하나 이렇게 둔 서민 가정이면 달 동안에 4인 기준으로 사용한 양, 이것을 기본 전기사용량으로 봤다는 거예요. 구간을 설정할 때 그런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면 누진과세로 가고 거기까지는 기본요율을 적용하고, 이렇게 소득세도……

저는 여쭙보는 겁니다. 1200에서 1400으로 간 이유를 합리적으로 저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그다음에 4600에서 5000으로 가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를 다 백업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쭙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 구간은 2008년 이전부터 1200만 원, 4600만 원, 그게 다 정해져 있었고요 그 이후에 8800만 원 구간만 계속 분화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고세율을 계속 더 늘려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우리가 1400 그다음에 5000 이렇게 한 것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2008년 대비 2023년이 155% 상승을 한 걸로 봐지고요, 누적 물가상승률은 25.5%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상승률이 155%이고—여기 나와 있습니다—누적 물가상승률이 25.5%인데 그것을 다 반영시킬 수는 없고 3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1400만 원하고 5000만 원은.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수감 또 면세자 비중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상적이고 아이디얼리(ideally)한 건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요.

○유동수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세제실에서 그냥 주먹구구로 일을 한 거예요. 종합세율을 정하면서도 구간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하나도 안 정하고 세금 걷는 목적에 맞춰서 국가가 얼마 써야 되니까 얼마 걷어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이상적이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제 이야기는……

○유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정리 좀……

○유동수 위원 지금 세제실장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가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국가의 세율을 정하고 세율구간을 정하는 일에 원칙 없이 정하면서…… 원칙 있게 정하자, 현재 세율이 소득세 비중이 낮다면 10년 동안에 소득세 비중을 얼마만큼 끌어올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구간을 연도별로 이렇게 상향하겠다, 우리가 그런 원칙을 정해서 가는 게 맞는 거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것은 맞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도 없이 지금까지 과세 원칙에 대해서 세금 걷을 돈만 생각하고 과세하는 원칙이 이상적이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실장님이.

○소위원장 류성걸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아까와 똑같은 취지의 말씀인데, 소득세제가 어떻게 돼야 되고 처음에는 1000·4000·8000, 10·20·30·40%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그렇게 됐는가하고 관련되는 사항들을 전체 다 정리를 좀 해 주시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고용진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소위원장 류성걸 고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 위원장님의 보류한다는 말씀이 논의를 다시 한번 뒤에 집중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신 걸로……

○소위원장 류성걸 나중에 같이 전부 다 볼 거예요.

○고용진 위원 어차피 여기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보류이고 합의가 되는 부분은 우선 임의결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 분들이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이 낮고 앞으로 재정소요가 많으니까 그것을 올려야지 왜 줄이나,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총조세 중에서 소득세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죽 늘어 왔는가, 물가는 얼마만큼 올랐는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지, 저는 전체 논의할 때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2008년부터 보면 소득세 비중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속도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 외국과,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늘었는가……

아니, 지금 보세요. 과표 1200~4600이면 총급여가 한 3000에서 70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소득수준으로는 높은 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가는 오르고

실질소득은 줄어드는데 내는 소득세는 계속 그 비율로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조세정책을 할 것인가, 현실도 계속 반영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소득세 가능하면 최대한 그냥 유지해’ 하지만 그런 비교를 해 보면 봉급소득자들,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고 어렵다는 점도 참작을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정부 측도 그런 관점에서 다음 자료들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오늘 소득세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관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7번은 좀 전에 정부가 과표 구간 조정한 것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율 구간의 과표구간 확대에 의해 고소득층의 세부담 경감폭이 확대될 수 있음에 따라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것도 나중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항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82쪽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 조정입니다.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을 7세 이상 자녀에서 8세 이상 자녀로 조정함으로써 자녀세액공제와 아동수당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자녀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7세 이상의 자녀로 하고 있는데 아동수당법에서 또 7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에 아동수당법이 개정돼서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녀세액공제 연령도 8세 이상의 자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서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변경된 것에 맞춰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입니다. 고용진 의원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고용진 의원님 안은 소득세법에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경우 현행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그다음에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합산액의 경우에는 현행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각각 200만 원씩 상향하는 것이고, 조특법에서 50세 이상인 사람은 다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한시적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액 규정을 삭제해서 종합소득 1억 원 이상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세액공제 한도액이 600만 원과 900만 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납입한도를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경우에 600만 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한 경우에는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 과세되는 것들을 15%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제도의 연혁을 보시면 2000년도 이전에는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연금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해 왔으나 2000년 정기회에서 ‘불입 시 소득공제 및 수령 시 과세’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연 24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했었습니다만 몇 년에 걸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금소득 수령 시 12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저율·분리과세가 가능하고 1200만 원 초과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85쪽 검토의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연금계좌 납입액의 증대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86쪽입니다.

그리고 납입한도 확대에 따라서 향후 연금소득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한 사람도 15%의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납입한도 확대 및 연금소득 분리과세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역진적인 세제일 수 있고 저소득층 가입 확대를 통한 빈곤 고령인구 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납입한도 상향만으로는 가입률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총급여 4000만 원 이하 구간의 사람인 경우에는 현재 세액공제한도 내에서만 연금저축을 납입하고 있고 2억 원 초과 구간의 사람은 평균적으로 현행 세액공제한도액을 110만 원 이상 초과하여 납입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구간의 경우에는 1.53%만 연금저축 등에 가입했지만 총급여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4.8%가 가입하고 있어서 저소득층의 경우에 고소득층에 비해 가입률 자체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개별 연구에 따르면 공제한도의 상향과 연금저축 불입액의 관계는 다양한 결론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인상이 통계적으로 연금저축 불입액을 유의미하게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 것이 있는 반면 공제한도액 상향이 연금저축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말씀대로 이 제도는 근로자, 사업자의 연금계좌 납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납입한도액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있어서는, 사실 연금계좌라는 것이 소득이 감소하는 은퇴 후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납입시점의 소득수준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공제한도를 달리할 필요성이 낮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연령문제라든가 소득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이를 다 없애고 단순화한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혹시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역진적 세제지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라고 하면 고소득층이 누진세에 따라서 굉장히 혜택이 많아지겠습니다마는 세액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저소득자의 공제율이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계층의 연금계좌 가입률이 낮아서 이게 빈곤 고령인구 억제에 효과적이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만 가지고 이것을 다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연구결과에 따라서 실제 연금계좌 납입액의 증가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심층평가에서 세액공제한도 확대가 중간소득자의 연금저축 납입액 증가에 유의미하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진 의원안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제도를 단순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나이라든가 소득수준이 아니라 은퇴 후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고용진 위원 제가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부분은 작년 조세소위 때도 제안을 하고 또 논의했던 건데요.

개정안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비중이 아무래도 적고, 따라서 노후에 여러 가지 소득 형성이 굉장히 취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공적연금이 커버하지 않는 부분을 결국 사적연금으로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고령화사회에서, 특히나 급격히 고령화되는 추세에서 그게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내게 된 거고요.

정부 측에서 우려하는 바도 그때 들었습니다. 결국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을…… 연령을 지금은 50세 이상부터만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연령에 상관없이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대비하는 사적연금을 들 수 있도록 장려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소득이 워낙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연령의 벽을 허물어줘도 물론 가입하기 어렵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 국민들을 놓고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막아 놓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정부재정이 조금 세수감이 있더라도 일정 정도 소득 되는 사람들이 연금계좌를 적극적으로 들도록 한도도 올려주고 연령도 벽을 허물어주면 노후대비를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안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정부안은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리과세를 하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 부분은 굳이 그럴 필요 있는가, 그것이 고소득층한테 유리한 역진적 세제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으니까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양측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65세부터 지급된다고 보면 실질적 퇴직연령인 55세에서 65세 구간은 현재 완전히 공백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적연금이 그럴 때 커버를 해 줘야 되고 그래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세제혜택률을 높여주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차관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분리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00만 원 초과를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종합과세를 하게 돼서 6~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그럴 경우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면 6~45%가 돼서 굉장히 높은 세율이 될 수가 있고요. 연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퇴직수당 이런 것, 연금의 인출이라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빼 버리면 사실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디스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공제를 해 줄 때는 저희가 12% 정도로 공제를 해 주게 되는데,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받았는데 그것에 대해 나중에 받을 때는 6~45%로 높은 세율을 받는 그런 점이 있어서 낮은 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또 다른 위원님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리고 제가 잠깐

만,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말씀하십시오, 세제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83페이지를 보시면 표 안에 현행에는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5500만 원 이하(40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정부안은 5500만 원 이하(45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치려고 개정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윗부분은 총급여액이고 아랫부분은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입니다. 그런데 총급여액하고 종합소득금액이 현행 5500만 원하고 4000만 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을 조금 높여줘야지, 5500만 원하고 4500만 원으로 총급여액하고 종합소득금액이 유사한 수준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안으로 갖고 왔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런데 제가 세법을 다른 것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군데를 봤는데 전부 들쭉날쭉이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월세세액공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보니까 완전히 들쭉날쭉이네요. 한번 보세요. 그것 다 맞춰 가지고 하려면…… 여기 총급여액 5500만 원에 사업자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인지 4500만 원인지 다른 데도 한번 보세요. 하여튼 참고로 하시니까요.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바로 그 83페이지에 보면 이 조항과 관련해서 개정 세수효과에 정부안에 대한 세수효과가 예산정책처하고 정부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한 400억, 500억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실무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뒤에 실무자가 설명하십시오.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 박상영 박상영 소득세제과장입니다.

실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처랑 정부랑 추계하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과표조정도 마찬가지로, 과표조정도 2.8조 정도이고 정부가 2.3조 정도이고요.

어떤 것이 차이가 있냐 하면 예산정책처는 연도가 가면서 연금납입액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동태적으로 진행되면서 더 커지는 것을 가정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정치 추계가 조금 더 큰 거고요. 모형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이는 가정의 차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차관님 설명에 약간 부연설명드리면, 85쪽에 나와 있는데 2010년 이전에는 연금계좌가 소득공제 방식이었습니다. 즉 6~45% 소득공제를 했기 때문에, 그때 소득공제를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로 1200만 원 이상은 받았는데 그 이후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12%, 15%만 공제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출할 때 12%, 15%를 공제받았는데 이것을 갑자기 45% 세율로 과세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 15의 최고세율인 15%로 분리과세하려는 겁니다.

○**진선미 위원** 국회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동의해야 되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제 개정안에 대해서 앞으로 줄어들 세수감소 효과가 엄청 차이가 났거든요. 몇십조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믿을 건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류성걸** 혹시 전문위원실에서 진선미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진선미 위원** 단순 추계방식 차이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옳은 거예요?

○**소위원장 류성걸** 아니면 나중에 예산정책처의 담당자라든지, 관련되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시면서 설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하시는 것보다.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김경호** 아까 50세 이상에 대해서 하는 규정이 조특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것에 따라서 50세 이상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하지 않았지만 예산처는, 그게 일몰이 2022년 말까지입니다. 일몰이 종료되고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보아서 세수추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차이가 중요한데, 나중에 자료 한번……

○**소위원장 류성걸** 나중에 자료를 전체 다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이렇게 국민들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고민을 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소득구간별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현황에서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역시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이 정책이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린다고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님 말씀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사적연금을 확대하고 장려하는 형태보다는 공적연금을 개혁하고 노인빈곤층의 소득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고용진 의원님 안과 정부안, 어떻게 보면 정부안이 좀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하면 당초에 불입할 때는 15% 또는 12%의 혜택을 받으면서 실제로 나중에 종합과세비율에 따라서 하게 되면 결국은 45%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래 우리가 2시부터 시작해서 첫날이고 해서 많이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오늘 첫날이고 다른 일정들도 있기 때문에…… 열 번째 항까지 논의를 하고 오늘 회의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10번은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즉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와 입학전형료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배 의원안과 송언석 의원안은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 모두를 포함해서 세액공제를 소득세법에 정하고 있고 정부안은 응시료는 소득세법에, 입학전형료는 시행령에서 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교육비 특별공제는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에는 시행령에서 수업료·입학금 등, 급식비, 교과서대금, 50만 원 한도의 교복구입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그다음에 30만 원 한도의 현장체험학습비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학수능시험 응시수수료는 3만 7000원에서 4만 7000원이고 일반대학에 최대 9회—수시가 6회, 정시가 3회—지원 가능하여 입학전형료 비용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에 부수되는 비용인 교복구입비라든지 현장체험학습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므로 대학 등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경비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또한 세액공제대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특성상 저소득 면세자는 혜택을 받기 어렵고 그래서 세제지원보다는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현재에도 수능 응시수수료 실질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수능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능 응시료 3만 7000원에서 4만 7000원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가계부담은 경감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대학입학전형료하고 수능 응시료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종배 의원님과 송연석 의원님도 안을 주셨지만 이게 다 같은 안입니다. 다만 표현이 좀 다른 것이고요.

저희가 입학전형료를 시행령으로 뺀 것은 학교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의 경우에는 학교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서 법에 별도로 나열을 하고요, 나머지 입학전형료는 학교에 지출하는 것이

라 시행령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라는 것은 현재도 이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공제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는 이것은 대표적으로 세제지원보다는 재정지원의 형태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미 저소득층 가정에 있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능이나 고등교육 자체의 무상화를 목표로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층 소득세 면세자가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고, 반대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 혜택이 더 집중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세제보다는 필요하다면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재정지원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세지출 관련해서는 ‘히든 서브시디(hidden subsid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과 세액공제라든지 소득공제 관련해서 어느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들은 차관님께서 앞으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이 경우에는 세제지원보다 재정지원이 낫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항목이…… 기존에 세제지원 하고 있는 다른 지원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라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세제지원이 맞지만 지금 이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세제지원이 아니고 재정지원이 더 적합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지금 이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면제들이 되고 있으니 오히려……

○조해진 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기본 취지는 똑같은 것 아닌가요?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통일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택스 익스펜디처(tax expenditure)하고 파이낸셜 익스펜디처(financial expenditure)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세제실장님, 그 부분도 사실은 검토가 되어야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소위원장 류성걸 안 그러면 세제 쪽으로 계속 가서, 예를 들어서 EITC 같은 경우도 지금 SOCX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검토하라고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일단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하고 입학 전형료 교육비 특별회계 세액공제에 대해서 입학 전형료는 시행령에 하고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는 법에서 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검토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반대가 있는데 잠정 의결인가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세요?

○장혜영 위원 지금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해서 이견을 말씀드렸는데 잠정 의결인 것인가요?

○소위원장 류성걸 아니, 제가 큰 틀에서 검토를 하시고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지금 이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조세지출에 관련되는 사항들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조세지출 4단계 분류를 해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다음 보시면……

올해 조세지출예산서 제출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소위원장 류성걸 내년도에 얼마가 됩니까? 69조 원 맞습니까? 뒤에 실무자들, 조세지출 내년도에 얼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전에 장혜영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한 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항목들을 다 보셔야……

○조해진 위원 제가 듣기에 장혜영 위원님은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세제지원이 아니

고 재정지원이 맞겠다고 말씀을……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안 하고 재정지출로 해야 되는데 그 틀을 전체를 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이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조세지출이 한 70조 정도 되고요.

○소위원장 류성걸 69조 몇천억인데, 알겠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교육비는 근로소득자가 자기를 재 생산하는 일종의 비용입니다.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사업자가 비용을 공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에 해당하는 필수적인 비용은 무슨 소득재분배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근로자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비는 공제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장혜영 위원 널 세액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소위원장 류성걸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 다만 시간이 촉박하고 또 검토할 사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내일부터 조금 더 심도 있게 또 더 오래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게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정부 관계자, 방기선 차관님과 고광호 세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회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고 용 진	김 상 훈	류 성 걸	배 준 영
신 동 근	양 경 숙	유 동 수	장 혜 영
조 해 진	주 호 영	진 선 미	한 병 도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 경 호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 1 차 관	방 기 선
세 제 실 장	고 광 호
조세총괄정책관	정 정 훈
소득법인세정책관	이 용 주
재산소비세정책관	조 만 회
조세및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김 건 영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변 혜 정
국제조세관리관	최 재 봉
징세법무국장	김 동 일
개인납세국장	장 일 영
법인납세국장	정 재 수
자산과세국장	박 재 형
조사국장	오 호 선